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9.16(화) 10:00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지역발전의 핵심 경쟁요소가 산업화 시대의 생산자원 확보중심에서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적 과학지식과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고,
-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부응하여 확대되는 국가R&D 예산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-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&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(안 제5조)

다.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추진(안 제6조)

라.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(안 제7조)

-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및 사업수행 지원

마.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 ~ 제14조)

-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, 위원 해촉 등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'은 지역발전의 핵심 경쟁요소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자원 확보 중심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창조적 과학지식과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,
-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부응하여 확대되는 국가R&D 예산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-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&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
- 다만,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따른 4차년도와 5차년도 예산확보 방안과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